




규정 정보전산센터 운영규정	문서번호	TWP-C104	
	제정일자	1998. 05. 15.	
	개정일자	2017. 12. 18.	
	개정번호	4	페이지

목 차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기구와 업무분장)
- 제3조(정보전산센터장)
- 제4조(운영위원회)
- 제5조(기능)
- 제6조(회의)
- 제7조(전산서비스 평가)
- 제8조(보칙)
- 부칙

작성부서	정보전산센터	제정일자	1998. 05. 15.
------	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담 당	정보전산센터장	기획예산처장			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4
		제정일자	1998. 05. 15.
	정보전산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
		개정번호	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이라 한다)의 정보전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10.10., 2017.12.18.>

제2조(기구와 업무분장) ① 정보전산센터에는 정보전산센터장을 두고 정보전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, 그 밑에 전산망운영부문과 시스템개발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2.10.10.,2017.12.18.>

② 전산망운영부문은 정보보호(정보보안, 개인정보보호) 관리,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, 전산망 운영 등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<개정 2017.12.18.>

③ 시스템개발부문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와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제3조(정보전산센터장) ① 정보전산센터장은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2.10.10., 2017.12.18.>

② 전산망운영부문과 시스템개발부문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소수의 직원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정보전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며,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<개정 2012.10.10.,2017.12.18.>

③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2.10.10.,2017.12.18.>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정보전산센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정보전산센터의 시설확충 및 전산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12.18.>
3. 이 대학교 내 전산망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<개정 2012.10.10>
4. 이 대학교 내 전산망 보안 문제에 관한 사항<개정 2012.10.10>
5. 기타 총장 및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12.10.10>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7.12.18.>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4	
		제정일자	1998. 05. 15.	
	정보전산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8.>

제7조(전산서비스 평가) ① 이용자의 정보전산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과 업무 개선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하여 각종 이용현황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
② 전산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, 평가한다.<개정 2017.12.18.>

③ 이용통계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정보전산센터 업무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.

[전문신설 2012.10.10]

제8조(운영세칙) <삭제 2017.12.18.>

제9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C104	
		제정일자	1998. 05. 15.	
	정보전산센터 운영규정	개정일자	2017. 12. 18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